



광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G 보

제36호 2026. 9. 9.(수)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2026-17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1
광양시 공고 제2026-1973호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
광양시 공고 제2026-1974호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7	
광양시 공고 제2026-1975호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26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6-221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31
-------------------	-------------------------	----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6-1986호	도로지정공고	33
--------------------	--------------	----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입 법 예 고 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17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기존의 자치법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 및 단체장 등 단순 명칭 변경과 일부 자구를 현행화

나. 행정통합에 따른 구 광주광역시 유사 조례(광주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와 중복내용 일원화 등 반영

다. 부칙에 시행일, 기존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규정 반영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수자원관리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희근(전화번호 : 061-286-7123, FAX : 061-286-4939, 이메일 : kh070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물관리”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와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물관리의 기본원칙) 통합 물관리는 법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통합특별시장은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려하여 10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관리 목표와 기본방향
2. 물관리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및 물 공급
4. 가뭄·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
5. 빗물 관리 및 물의 재이용 촉진
6.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적절한 개발·이용
7.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수질 개선
8. 물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
3. 기본계획과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문화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 물관리, 자연재난관리, 농업용수 업무 담당 실장·본부장·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



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물관리, 물환경 보전 관련 기관의 임직원
 3. 물관리, 물환경 보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 물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통합 물관리 사업의 추진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물관리에 필요한 연



구·조사 및 기술개발,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복원,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물관리 협약)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와 물의 이용·배분,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과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물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모집)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물관리에 관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제안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본계획의 수립·사업,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연번	규 칙(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예시	제2조 “0000000000”	제2조 “0000000000”	수정사유 기재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훈복지 시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생계급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 확보

3. 주요내용

- 보훈복지 시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신설(안 제4조제3항)
- 저소득주민 등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안정성을 위한 신설(안 제8조제3항)



○ 회수 절차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신설(안 제11조제2항)

4.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9. 8. ~ 9. 28.(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6. 의견 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1층 주민복지과(우 57785)

○ 전 화: 061-797-2814

○ 팩 스: 061-797-2594

○ 전자우편: jjh9328@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 12. 27.>

제4조(책무) ① 모든 광양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광양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월 150,000원
2.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비 수당 : 월 30,000원
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7.>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후 그 수당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 -----국가보훈 처 장 의 부 장 관 의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 -----국가보훈 부 장 관 의 -----.
제4조(책무) ①·② (생 략) <신 설>	제4조(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



현행	개정안
	제공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환수 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1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생계급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 확보



3.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본문 일부 수정(안 제3조제1항제1호)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기준 정비(안 제3조제1항제2호)
- 배우자 수급권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안 제3조제2항)
- 저소득주민 등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안정성을 위한 신설(안 제4조제2항)
- 회수 절차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신설(안 제9조제2항)

4.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9. 8. ~ 9. 28.(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6. 의견 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1층 주민복지과(우 57785)



- 전 화: 061-797-2814
- 팩 스: 061-797-2594
- 전자우편: jjh9328@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배우자
2.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②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사망 후 재혼한 경우 배우자수당 수급권은 소멸하며, 이후 이혼하더라도 소멸된 수급권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150,000원
2.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월 30,000원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월 100,000원
5. 그 밖에 시장이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 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의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 다.----- -----. 1.-----국가보훈처장이 ----- -----.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 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삭제) 참 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 -----. 1.-----국가보훈부장관이 ----- -----및 그 배우 자 2.「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을 지급 받는 사람 ②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사망 후 재 혼한 경우 배우자수당 수급권은 소멸 하며, 이후 이혼하더라도 소멸된 수급권 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신 설>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150,000원 2.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월 30,000원 지급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지급 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월 100,000원 지급 5. (생략) <u><신설></u>	제4조(지원사업)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150,000원 2. 참전유공자 참전의료비수당 : 월 30,000원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4.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 : 월 100,000원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수당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9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공공시설 등 감면 적용 대상의 해당 지역 거주 및 주소지 등록 요건 폐지
3.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예우 자격 지역제한 규제를 위한 개정(안 제2조제2호)
4.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9. 8. ~ 9. 28.(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6. 의견 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1층 주민복지과(우
57785)

○ 전 화: 061-797-2814

○ 팩 스: 061-797-2594

○ 전자우편: jjh9328@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좌동)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u>가문의 병역 이행자를 말한다.</u> 3. (좌동)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9.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816-7 외 1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2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81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월면 진월추동길 9	20260909	20081001	읍면명과 마을지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705-18, 705-17, 705-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시장길 16-9	20260909	20081001	광양읍 오일시장 인용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6. 9. 9.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6. 9. 10. ~ 2026. 9. 28.(18일간)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도로위치	길이	너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 149-10번지 외 3필지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468-18번 지	54m	15m	677m ²	주식회사 에○지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